## 자동이체입금서비스 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한양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의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의 자동이체입금서비스(이하 "이체서비스"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이체서비스"라 함은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이용하여 고객의 출금계좌에 서 사전에 약정한 일정금액(이하 "이체금액"이라 한다)을 고객의 입금계 좌로 자동이체 입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2. "출금계좌"라 함은 이체금액이 출금되는 계좌로서 고객이 지정한 입출금 이 자유로운 은행의 예금계좌를 말한다.
- 3. "입금계좌"라 함은 이체금액이 입금되는 고객명의의 회사 계좌를 말한다.
- 4. "출금일"이라 함은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이 출금되도록 사전에 지정한 날(매월 5일, 15일, 25일 중 택일, 지정한 날이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을 말한다.
- 5. "입금일"이라 함은 입금계좌에 이체금액이 입금되는 날로 출금일의 익영 업일을 말한다.

제3조(고객의 출금계좌 요건) 고객의 출금계좌는 고객 또는 가족명의(고객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계좌이어야 한다.

**제4조(신규, 변경 및 해지 신청)** ①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서와 본인 확인 서류를 제출하거나 회사의 홈트레이딩서비스를 통하여 이체서비스를 신규.변경.해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지 신청의 경우 전화에 의해 본인확인을 거쳐 해지도 가능하다.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신규, 변경 및 해지 신청한 서비스 내용을 금융결제원에 등록 요청하며, 고객이 회사에 신청을 한 날로부터 4영 업일후 금융결제원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이체서비스의 신규, 변경 및 해지 신청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철회 신청) ① 고객이 이체서비스의 거래지시.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정한 출금일 4영업일전까지 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에 의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하

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철회 신청한 서비스 내용을 금융 결제원에 등록 요청하며, 금융결제원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이 체서비스의 철회 신청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이체서비스의 처리)** ① 회사는 출금일에 출금계좌에서 별도의 신청서 없이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고객의 입금계좌로 입금처리 한다.

- ② 회사는 출금일의 은행 영업시간까지 고객의 출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출금가능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한다.
- ③ 회사는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출금일 현재 이체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출금계좌의 지급제한 등 출금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이체출금을 하지 않는다.
- ④ 출금일 출금계좌에 다수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정하는 이체 순서에 따른다.
- ⑤ 출금일과 입금일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이체금액이 회사에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는 이체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수수료)** 회사는 이체서비스와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자동해지) 입금계좌가 통.폐합된 경우 이체서비스는 자동 해지된다.

제9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고객은 이용계좌의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직접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접수창구의 주소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 1. 접수창구 : 본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의 11) 또는 영업점(홈페이지 참조)
- 2. 대표전화 : (02)3770-5000

제10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 (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

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변경사항의 신고)** 고객은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 영업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기타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규 및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 에 따른다.

>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 첨>

- 1. 제7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체서비스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부가서비스 수수료

※ 해당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